공 개

| 의안번호 | 제 26 호 |
| --- | ---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6. 1. 21.<br>(제 2 차) |

의결사항

#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| 제 출 자 | 위원장 권 대 영 |
| --- | --- |
| 제출<br>연월일 | 2026. 1. 21. |

## 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공매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NSDS 잔고 보고자가 결제수량부족으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·유지 의무를 면제하고자 함

## 3. 주요골자

□ NSDS 잔고 보고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및 기록·유지 의무 면제(안 제9조의4제2항 신설)

○ NSDS 잔고 보고자는 NSDS를 통해 모든 매도주문에 대해 공매도 위반 여부 점검이 가능하므로, 결제수량부족으로 인한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차입공매도 여부 확인 기록·유지 의무를 면제

## 4. 참고사항

가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>

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>

<별 지>

#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본문 및 단서 중 “제3항”을 각각 “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에서 제3항을”을 “제5항에서 제4항을”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 첨>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제9조의4(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) ①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(법 제182조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6-21조의 보관기관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탁자를 포함하되, 결제시한 이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| 제9조의4(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| |

| | | |
|---|---|---|
| <신 설> 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| NSDS 보고자 의무면제 |
| ② (생 략) |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| |
|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자의 법 제180조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<br>1. ~ 4. (생 략) | ④ -------- 제3항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

| | | |
|---|---|---|
|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용한다. 다만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최근 6개월 동안"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<br>----제4항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 | |
| ⑤ 제4항에서 제3항을 준용하는 때에 제3항 각 호의 "매도일수"는 각각 "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일수"로, "누적매도금액"은 각각 "법 제180조의2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법 제180조의3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"으로 본다. | ⑥ 제5항에서 제4항을-----<br>---------제4항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 | |
| ⑥ (생 략) |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|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금융위원회 |
|---|---|
| 소관부서 | 자본시장과 |
| 연 락 처 | 02-2100-2656 |